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11월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 권오규

●대통령령 제20367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지주회사”를 “회사”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법 제 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와 합하여”를 “회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회사등이”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이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이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를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나목에서”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를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요”를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말한다)의 주요”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 자산총액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세부요건”을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요건에”를 “각 호의 기준에 모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100분의 50[손자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손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등록한 경우로서 그 해외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자율규제 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제4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 나. 자회사가 외국법인인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로서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4의2.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요출자자”를 “대주

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부요건”을 “세부기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양호할”을 “건전할”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2. 자회사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이하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4.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5.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6.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 중 업종이 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의 해당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나.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가.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닐 것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지분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 금융기관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외국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사업회사가 아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외국금융지주회사 중 그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사업회사(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이하 “국내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내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인 국내 금융기관[해당 국내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국내지주회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국내계열회사”라 한다]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국내계열회사와 국내지주회사등 사이에 신용공여·자산거래·주식소유 등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의 감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그 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배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3. 지배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지배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 의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②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대주주가 되려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 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 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대주주가 되려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의7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지주회사등간의”를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 사이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 이상으로 손자회사의 주식”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제4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나.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가 외국 법인인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자회사가 새로이 외국 법인인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로서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1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양호할”을 “건전할”로 한다.

4의2.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자회사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

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회사등

가.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되는 경우

나.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손자회사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되거나 직접 지배받지 아니하는 다른 자회사의 손자회사로 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조 같은 호의 적기시정 조치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④ 법 제38조제2항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로서 제재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임 또는 제직 당시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를 받기 이전에 사임·사직한 자로서 사임·사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자회사등

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제19조 제6항 제1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최대주주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최대주주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최대주주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최대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③ 법 제40조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지주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④ 법 제40조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금융지주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2.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4. 제3호 외에 그 금융지주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금융지주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감사위원회)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

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9조의3(지배구조 특례가 인정되는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의 투명성의 요건)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의 투명성 등의 요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완전자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사항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2. 완전자회사등을 포함하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전체를 통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자기자본의 산정방법) 법 제43조제1항 전단, 제46조 전단 본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은 최근 분기 결산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등) ① 법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율변동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 유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②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유가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유가증권 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3조제3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유가증권의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수 없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법인인 자회사(이하 “외국 자회사”라 한다)의 최대출자자일 것
2. 외국 자회사 주식의 분산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비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아니할 것
3.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그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 단서”를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22조제2항제4호 내지”를 “제22조제2항제4호, 제6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48조제1항제1호”를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로,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0장(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처분”을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

는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회생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p>1. 대주주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이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p>

구분	요건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p> <p>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p>	<p>가.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자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구분	요건
	<p>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대주주가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p>가. 인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p> <p>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p> <p>다. 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p>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마. 제5호의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5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비고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마목 또는 제4호 라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요건
<p>1. 대주주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구분	요 건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p> <p>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p> <p>나. 제1호다목 및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p>	<p>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자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구분	요건
5. 대주주가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p>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p> <p>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p> <p>다. 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대주주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p>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2호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마. 제5호의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비고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다목 또는 제4호 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소규모 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71호, 2007. 8. 3. 공포, 2007. 11. 4. 시행)됨에 따라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관계 설정요건을 규정하고,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으로서 자산총액 기준 신설(영 제3조의4 신설)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나.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설정 요건 신설(영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 신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한하여 국내 금융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하고, 다른 국내 계열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주식소유의 건전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설정 요건을 정함.